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9년 5월 31일

○ 회부일자 : 2018년 6월 04일

3. 제안이유

○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제3조)

- (현재) 20명 이내 → (변경) 25명 이내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영지)

가. 제출배경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 2018.4.6.) 개정
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기구가 조정됨으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이 변경됨. 이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임.

- (당초) 바이오환경국장 → (변경) 바이오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

나. 주요내용 및 검토 의견

-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현행 “20명 이내” 에서 “25명 이내” 로 개정한 것임.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 2018.4.6.) 개정으로, 도 행정기구가 조정되었고,
 -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시행 2018.4.6.)
 - 바이오환경국 → 바이오산업국 / 환경산림국 신설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규정은 2018년 4월 6일자로 개정되어, 당연직 위원에 환경산림국장이 추가되었음.

- 이에, 같은 조 제1항의 위원회 위원수에 관한 조항도 함께 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정하지 않아, 동 조례에 따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수는 20명 이내여야 하지만, 실제 위원 수는 1명이 초과된 21명으로, 사실상 조례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 본 개정 조례안은 다소 늦었지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 2018.4.6.) 개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1명 증원되었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위촉 위원의 증원도 요구되는 바, 위원회 위원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 근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구성: 21명

- 위원장 : 행정부지사 / 부위원장: 위원 중 호선
- 당연직 위원(10명):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경제통상국장, 농정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균형건설국장, 바이오산업국장, 환경산림국장
- 위촉 위원(11명)
 -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전·현직 부교수 이상
 - ② 충청북도의회 의원
 - ③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자
 - ④ 기업,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전·현직 임원
 - ⑤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 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임기: 2018. 7. 17. ~ 2020. 7. 16.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주요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사항의 조정·심의

-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 규제의 신설·강화
- 규제의 등록·공표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
-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 2018년 활동내역

- 1회('18.2.1.~2.2. 서면): 신설·강화 등록규제 심사
- 2회('18.3.5. 회의): 「중평 에듀팜 특구 조성」 관련 규제개선 방안 논의
- 3회('18.7.4.~7.5. 서면): 신설·강화 등록규제 심사
- 4회('18.9.5. 회의):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1차 심사